



# 표고, 느타리, 양송이 등 버섯류<sup>1)</sup> 원산지 표시 안내

## □ 원산지 표시 방법

- **국내**에서 집중배양된 압착 대목(배지) 또는 원목을 이용하여 버섯류 재배

올바른 원산지 표시	미표시 내용	과 태 료
○○버섯 : <b>국내산</b>	국내산	<b>최 고</b> 1,000만원

- **중국**에서 집중배양된 압착 대목(배지) 또는 원목을 수입하여 버섯류 재배

올바른 원산지 표시	미표시 내용	과 태 료
○○버섯 : <b>국내산(집중배양: 중국)</b>	① 국내산	<b>최 고</b> 1,000만원
	② 집중배양: 중국	
	①, ② 모두	

## □ 원산지 미표시 (행정 처분) : 출하량 × 가격 = 과태료

		↓	↓	↓
○ 예 시)	표고버섯	:	125상자 × 80,000원	= 1,000만원
	느타리버섯	:	600상자 × 10,000원	= 600만원
	양송이버섯	:	400상자 × 12,000원	= 480만원

## □ 원산지 거짓표시 (형사처벌) :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

※ 원산지 표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전화 (☎1588-8112) 또는 스마트폰 「농식품안심이」 앱의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 참조

1) 원산지 표시 대상 버섯류 : 표고, 느타리, 양송이, 새송이, 팽이, 목이, 석이, 영지, 운지, 송이, 능이, 상황, 싸리, 아가리쿠스, 동충하초